

4.4.20 산학협력단 직무발명규정

제정 2019. 12. 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여 발명활동 및 연구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업무관장) ① 본 대학교의 직무발명에 관한 관리, 운영 및 보상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이 관장하고 산학협력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이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 규정을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상표법상의 상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등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은 각각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등으로, “발명”은 각각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등으로, 그리고 “발명자”는 “창작자” 등 각 법률이 규정하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창작한 자연인으로 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 등"이라 함은 본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 중 발명을 한 자를 말하며,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발명을 한 교직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3. "직무발명"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발명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작한 발명이거나, 본 대학교, 본 대학교 산하 법인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한다.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 대학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제 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발명으로 본다.
4.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5. "대학교명"이라 함은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를 말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 "학교법인 초당대학교" 명의를 포함할 수 있다.
6. "모인(冒認)"이라 함은 남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꾸미어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7. "노하우"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과 그 기술의 사용이나 응용 방법에 관한 비밀 지식 또는 경험을 말한다.
8. "기술료의 보상"이란 본 대학의 연구 활동의 성과로써 획득한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등을 기술 이전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그 기술료의 일부를 해당 구성원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제4조(권리의 승계) ①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단, 저작권의 경우, 과제 협약에 따라 본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명의로 공표하여야 하는 저작권을 본 규정에 의해 승계한다.

②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명자 등의 요청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③ 본 대학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④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자유발명에 의한 지식재산권을 본 산학협력단에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⑥ 본 대학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본 대학이 권리를 승계한 후 발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승계를 포기하거나, 등록권리를 이전하거나, 그 대가 또는 평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발명자는 직무발명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자 및 중개자에 대한 보상) 본 대학교가 권리를 승계하여 발생한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한 수입 중 일부는 발명자 및 발명중개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권리의 소속

제6조(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직무발명신고서 및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으면 산학협력단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승계, 출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발명신고서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발명자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은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발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산학협력단은 본 대학교 관련규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산학협력단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발명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미승계 의사를 통지한 때에도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8조(승계시점 등) ① 산학협력단이 제7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산학협력단장이 제7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본 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유권 및 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출원 등) ① 산학협력단은 제8조에 의해 권리를 양도받는 즉시 본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은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출원 등의 제한) 직무발명 등을 행한 교직원 등은 단장으로부터 대학교가 특허 등을 받을 권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출원 등을 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제비용의 부담) ① 본 대학교가 제8조에 의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을 위한 제 경비는 본 대학교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해외출원을 위한 제 경비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담률을 정할 수 있다.

② 발명자 개인명의 소유에 의해 권리승계 이전에 발생 및 부담한 관련 비용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공동출원인에게 제 경비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④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인 경우 해당 과제의 관련규정 및 별도 약정 등에 따른다.

제12조 (지식재산권의 유지)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등록 후 5년 이내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여부를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산학협력단은 해당 지식재산권을 해당 교원 등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3장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수입사용

제13조(지식재산권의 실시)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으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이로 인한 수익창출을 위하여 기술마케팅 및 수요기업 발굴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기술료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①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 및 기술이전 보전비를 순차적으로 공제한 다음 그 수입의 50%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발명자의 의사에 따라 발명자의 연구 과제에 재투자할 수 있다. 보상금의 지급 형태 및 시기 등은 발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이 있는 연구과제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은 관련 지원기관의 기술료 지급 기준에 따른다.

③ 기타 별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은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④ 기술이전 중개자에 대한 보상은 중개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발명자 보상금의 지분) ①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하며, 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자의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직원 등에 교직원의 지도 또는 통솔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한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② 발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모든 발명자의 동의하에 보상금의 지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발명자간 이의로 지분 결정을 못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이후 단장은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및 참여율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지급시기) 보상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술료가 본 산학협력단에 납부된 후 지급한다.

제17조(보상금의 승계) ① 보상금을 지급 받는 권리는 발명자가 정년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정년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민법상의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본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에 연락처로 보상금 지급을 통보의 연락을 시도한 후 3년이 경과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산학협력단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보상금 반환)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된 경우 지급된 보상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기술실시를 위하여 본 대학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및 지식재산권 관리 전담부서는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직무발명신고 및 권리승계합의서

*발명의 명칭	국문: 영문:			
*발명자 (양도인)	발명자	지분(%)	소속학과	전화번호/E-mail
	한글 : (인) 영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한글 : (인) 영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한글 : (인) 영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출원희망국 <input type="checkbox"/> 국내 <input type="checkbox"/> 국제특허출원(PCT) <input type="checkbox"/> 해외 개별 국가 ()			
	*발명 공개사항 <input type="checkbox"/> 논문지 게재 <input type="checkbox"/> 학술발표 <input type="checkbox"/> 연구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발표지명	[첨부: 발표내용 사본]	발표일		
*공동출원	<input type="checkbox"/> 단독출원 <input type="checkbox"/> 공동출원(권리자 또는 기관명:) 지분비율:)			
	사유			
*관련 연구과제	사업명	연구기간		
	지원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과제명	과제고유번호		
	주관기관	기여율		
양수인	성명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소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위 발명을 초당대학교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신고하며, 위 발명자들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상기 정보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기타 전반적인 특허 행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관련 특허 사무소 또는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제출방법 : 발명자 및 신고자 날인(서명)본 원본제출 또는 칼라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제출처 : 산학협력단 사무실 또는 이메일 (00000000cdu.ac.kr)

발명 설명서

1. 발명의 명칭

국문 :

영문 :

2. 발명의 배경 (발명하게 된 동기)

3. 발명의 내용 (그림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가급적 자세하게 설명함)

4. 발명의 효과 (발명으로 인하여 개선되는 내용)

5. 주장하려는 권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6. 발명의 용도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사업화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발명의 활용가능성이 낮을 경우 발명자 상담을 진행하거나 출원이 보류될 수 있음

7. 선행기술 및 참고자료 (있을 경우 제공)

- 발명과 관련된 핵심키워드를 입력해주시시오 (5개 내외)
- 유사특허, 논문 등 List UP 해주십시오.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주시시오)

※ 특허검색방법

- 특허청 특허검색사이트(<http://www.kipris.or.kr>)에 접속 후 관련 키워드를 이용하여 유사특허를 검색